

EU 사탕정책개혁 합의

2005년 11월 24일 유럽연합(EU) 농업장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사탕제도 최종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점을 찾기까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사탕가격 인하와 이에 따른 소득손실 보상 비율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가에 있었다. EU는 수정된 개혁안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사탕생산이 약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EU는 할당제(quota) 하에서 약 1,7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탕 가격인하에 따라 EU 역내 소비를 초과하는 과잉 생산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가격인하

EU 농업장관들은 사탕 가격인하 비율을 지난해 6월 제시된 개혁안의 39%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의 보상 비율을 60%에서 4.2% 증가한 64.2%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사탕무의 가격은 기존 42%에서 39.5%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탕 생산자가격은 4년 동안 누진감축에 따라 연간 20%, 25%, 30%, 36% 인하될 것이다. 2006/07년 이후 사탕의 기준가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탕 기준가격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기준가격	505.5	473.9	442.3	404.4

2. 직접보조(Direct Aid)

이번 사탕제도의 최종 개혁안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분의 64.2%를 보상받게 된다. 더욱이 사탕 생산의 50% 이상을 포기한 사탕무 생산 농민들은 공동농업정책(CAP)의 예산에서 편성된 40%의 예산 추가분에서 30% 정도와 해당 가맹국의 관련 기금에서 10% 정도를 지원받는 등 가격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분을 100%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한 4년의 전환기간 동안 보조의 30%가 추가 편성되어, 다각화기금(diversification fund)으로 지불된다.

한편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은 여타 가맹국에 비해 가격인하에 따른 농가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장려금(premium)의 60%에 상응하는 추가기금을 배정받게 된다. 또한 핀란드의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자국내 사탕무 가공업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도록 ha 당 350유로를 보조받게 된다.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써 사탕 생산을 포기하는 스웨덴 고틀란드 지역의 사탕무 재배 농민들은 500만 유로를 보조받게 된다.

3. 구조조정 조치(Restructuring scheme)

EU는 최종 개혁안에 따라 농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휴경에 따른 보상조치를 도입하고, 최대 피해지역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구조조정 기금(restructuring fund)을 신설하게 된다. 해당 기금은 모든 사탕, 사탕대용물(isoglucose: 전분질의 곡물에서 얻는 사탕 대용물), 저장다당류(inulin) 등에 대한 부과금(levy)에 의해 조달하게 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부과금 단가와 지급금액은 <표 2>와 같다. 한편 부과금 단가(levy rate)

는 사탕 가격 인하의 범위를 고려하여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농민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2006/07년을 시작으로 1년차에 730유로/톤, 2년차에 730유로/톤, 3년차에 625유로/톤, 4년차에 520유로/톤에 달한다.

표 2 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세율 및 지불금액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부과금 단가	126.4	173.8	113.3	0.0	0.0
지불금액	730	730	625	520	0

4. 다각화 기금(Diversification fund)

향후 EU는 최대 피해를 입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각화조치(diversification measure)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표 3>과 같다. 한편 구조조정 보조의 10%는 구조조정에 따라 특화된 기계 설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설비업자나 사탕무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표 3 다각화 기금 추이

단위: 유로/톤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2011
금액	109.5	109.5	93.8	78.0	0.0

5. 할당제(Quotas)

유럽 위원회(EU Commission)는 사탕대용물(isoglucose)에 대한 쿼터를 2006/07년을 시작으로 매년 3년 동안 100,000톤씩 증량하여 총 300,000톤

증량하기로 제안한 바 있었다. 이번 개혁안 합의에 따라 이 쿼터는 현재 507,680톤에서 최대 807,680톤으로 증량하게 된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사탕대용물의 쿼터를 다른 가맹국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증량하며, EU 가맹 이후 처음 3년 동안 루마니아는 1,966톤, 불가리아는 11,045톤 증량하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은 4년의 전환기간 동안 각각 60,000톤, 8,000톤, 35,000톤의 쿼터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가공업체들은 이 쿼터를 배정받기 위해서 톤당 73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기존 'A'와 'B' 형태의 할당제를 단일생산 할당제로 통합하자는 지난해 제시된 사탕제도 개혁안과는 달리 이번 합의된 최종 개혁안에는 기존 할당제를 유지하게 된다.

6. 시장균형 유지

이번 합의된 최종 개혁안은 자동개입제도(automatic intervention mechanism)를 대체하게 되는 민간비축제도(private storage mechanism)의 도입과 함께, 2006-2010년 동안 전환기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시장개입제도를 유지하여 시장균형에 이바지 하게 된다. 또한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은 이듬해 기준가격의 80% 수준에서 유지된다.

(자료: agra-net.com. "EU sugar reform - in detail")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